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1,547,238	15,046,417
일반회계	437,488,510	13,124,655
특별회계	64,058,728	1,921,762
공기업특별회계	31,946,569	958,39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946,569	958,397
기타특별회계	32,112,159	963,365
주택사업특별회계	12,200	366
의료보호특별회계	403,450	12,10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0,000	15,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95,000	14,850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79,865	26,396
수질개선특별회계	29,037,974	871,139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783,670	23,51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수해 및 폭설 관련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지방채 7,000,000천원을 차입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조서]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조서]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14,48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